

원고:
피고:

사건 번호:

법원에 제출하지 마십시오

6. a. 다음 일자 전후에(일자 기재):

피고는(각 피고의 이름):

(1) 해당 부동산을 다음과 같이 임차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. ☐ 월 단위 임대차 ☐ 기타 임대차 형태(자세히 기재):(2) 임대료를 다음과 같이 지급하기로 합의하였으며(임대료 기재): \$ 지급 주기는 ☐ 월별
☐ 기타(주기 명시):(3) 다음 날짜에 임대료를 지급하기로 하였습니다. ☐ 매월 1일 ☐ 기타 날짜(기재):b. 본 ☐ 서면 계약은 ☐ 구두 계약은 다음 사람과 체결하였습니다.(1) ☐ 원고. (3) ☐ 원고의 권리승계인.(2) ☐ 원고의 대리인. (4) ☐ 기타(자세히 기재):c. ☐ 항목 6a에 이름이 기재되지 않은 피고는(1) ☐ 전차인.(2) ☐ 양수인.(3) ☐ 기타(자세히 기재):d. ☐ 해당 계약은 추후 다음과 같이 변경되었습니다. (자세히 기재):e. ☐ 본 소장의 근거가 되는 모든 부속합의서 또는 첨부서류를 포함한 서면 계약서 사본을 첨부하였으며, 이를 증거 1로 표시합니다. (주거용 부동산에는 반드시 필요함. 다만 항목 6f에 표시한 경우는 제외. 민사소송법 § 1166 참조.)f. ☐ (주거용 부동산의 경우) 서면 계약서 사본을 첨부하지 않은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. (사유 기재):(1) ☐ 해당 서면 계약서는 임대인 또는 임대인의 직원이나 대리인의 점유 하에 있지 않습니다.(2) ☐ 본 소송은 임대료 미지급에만 근거한 소송입니다(민사소송법 § 1161(2)).

7. 항목 6에 명시된 임대차는(7a 또는 7b에 표시):

a. ☐ 2019년 임차인 보호법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(민법 § 1946.2). 해당 임대차가 면제 대상인 근거가 되는 구체적인 하위 조항은 다음과 같습니다. (기재):b. ☐ 2019년 임차인 보호법의 적용을 받습니다.

8. (항목 7b에 표시한 경우에만 작성합니다. 해당하는 네모칸에 모두 표시하십시오.)

a. ☐ 해당 임대차는 임차인의 귀책사유에 따른 정당한 사유로 종료되었습니다(민법 § 1946.2(b)(1)).b. ☐ 해당 임대차는 임차인에게 귀책사유가 없는 정당한 사유로 종료되었습니다(민법 § 1946.2(b)(2)). 그리고 원고는(하나만 체크):(1) ☐ 민법 § 1946.2(d)(2)에 따라, 임대료 지급기일 전에 임대차 마지막 달의 임대료 지급을 면제하였으며, 그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. (금액 기재): \$(2) ☐ 민법 § 1946.2(d)(3)에 따라 1개월분 임대료 상당액을 직접 지급하였으며, 그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. (각 피고의 이름 및 지급액 기재):c. ☐ 피고가 퇴거하지 않았으므로, 원고는 본 소송에서 8b의 총액을 손해배상금으로 회수하고자 합니다.9. a. ☐ 피고는(각 피고의 이름):

다음의 통지가 동일한 날짜 및 동일한 방식으로 송달되었습니다.

(1) ☐ 3일 내 임대료 지급 또는 퇴거 통지(2) ☐ 30일 내 퇴거 요구 통지(3) ☐ 60일 내 퇴거 요구 통지(4) ☐ 3일 내 퇴거 요구 통지(5) ☐ 연방 CARES 법(15 U.S.C. § 9058(c))에 따른
30일 내 퇴거 요구 통지(6) ☐ 3일 내 계약상 의무 이행 또는 퇴거 통지(항목 7b에
표시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음)(7) ☐ 민법 § 1946.2(c)에 따른 3일 내 퇴거 요구 통지. 계약상
의무 이행을 요구하는 사전 통지가 다음 날짜에
송달되었음(날짜 기재):(8) ☐ 기타(자세히 기재):

원고: 피고:	사건 번호: 법원에 제출하지 마십시오
------------	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

9. b. (1) 다음 날짜에(날짜): **9a**에서 표시된 통지서에 기재된 기간은 해당일 종료 시 만료되었습니다.
(2) 피고들은 해당 날짜까지 통지서에서 요구한 사항을 이행하지 않았습니다.
- c. 통지서에 기재된 모든 사실은 사실에 부합합니다.
- d. ☐ 해당 통지에는 임대차계약의 해지를 선택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.
- e. ☐ 통지서 사본을 첨부하였으며, 이를 증거 2로 표시합니다. (거주용 부동산의 경우 필요. (민사소송법 § 1166.) 민법 § 1946.2(c)가 적용되어 두 건의 통지가 필요한 경우, 두 통지서의 사본을 모두 제출하십시오.)
- f. ☐ 1명 이상의 피고에게 첨부서류 10c에 기재된 바와 같이, (1) 민법 § 1946.2(c)에 따른 사전 필수 통지, (2) 다른 통지, (3) 다른 날짜의 통지, 또는 (4) 다른 방식의 통지가 송달되었습니다. 항목 10c에 표시하고, 각 피고 및 통지에 대해 항목 9a-e와 항목 10에서 요구하는 정보를 기재한 진술서를 첨부하십시오.)
10. a. ☐ 항목 9a에 기재된 통지는 항목 9a에 명시된 피고에게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송달되었습니다.
- (1) ☐ 다음 날짜에 피고에게 사본을 직접 교부하여 송달했습니다. (날짜 기재):
- (2) ☐ 다음 사람에게 사본을 놓고 가는 방식으로(이름 또는 신원 설명):
적절한 연령과 분별력을 가진 사람에게, 다음 날짜에(날짜): 피고의
☐ 거주지에서 ☐ 사업장에서 전달하고, 또한 피고의 거주지로 사본을 우편 발송함
(날짜 기재): 피고를 거주지 또는 통상적인 사업장에서 찾을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.
- (3) ☐ 다음 날짜에 해당 부동산에 사본을 게시하는 방식으로(날짜 기재):
☐ 그리고 해당 부동산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에게 사본을 전달하고, 추가로 해당 부동산 주소로 피고에게 사본을 우편 발송함 (날짜 기재):
☐ 피고의 거주지 및 통상적인 사업장을 확인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.
☐ 그곳에서 적절한 연령과 분별력을 가진 사람을 찾을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.
- (4) ☐ (3일 내 통지에는 적용되지 않음. 사용 전에 민법 제1946조를 참조.) 다음 날짜에 피고를 수신으로 한 등기 또는 배달증명 우편으로 사본을 발송하여 송달함. (날짜 기재):
- (5) ☐ (거주용 임대차에는 적용되지 않음. 사용 전에 민법 제1953조를 참조.) 당사자 간의 서면 상업용 임대차계약에 명시된 방법에 따름
- b. ☐ 다음 사람은(이름):
공동 서면 임대차계약에 서명한 모든 피고를 대신하여 송달받았습니다.
- c. ☐ 항목 9f에 기재된 피고들에 대한 통지 송달 관련 정보는 첨부서류 10c에 기재되어 있습니다.
- d. ☐ 항목 9a의 통지에 대한 송달증명서를 첨부하였으며, 이를 증거 3으로 표시합니다.
11. ☐ 임대료 지원 관련 진술(임대료 미납 또는 기타 금전적 의무 불이행에 근거한 모든 소송에서 필수 사항. 원고는 항목 11a-d를 모두 작성해야 하며, 추후 권석판결을 구하는 경우에는 임대료 지원 관련 임대인 확인서—불법점유(양식 UD-120)를 추가 제출해야 합니다.)
- a. 원고는 본 소장의 근거가 되는 통지서에서 청구된 금액에 해당하는 임대료 지원 또는 기타 금전적 보상을 다른 어떠한 다른 출처로부터 ☐ 받았습니다. ☐ 받지 않았습니다.
- b. 원고는 본 소장의 근거가 되는 통지서의 날짜 이후 발생한 임대료에 대하여, 어떠한 다른 출처로부터 임대료 지원 또는 기타 금전적 보상을 ☐ 받았습니다. ☐ 받지 않았습니다.
- c. 원고는 본 소장의 근거가 되는 통지서에서 청구된 금액에 해당하는 임대료 지원 또는 기타 금전적 보상과 관련하여, 다른 어떠한 출처에 현재 진행 중인 신청이 ☐ 있습니다. ☐ 없습니다.
- d. 원고는 본 소장의 근거가 되는 통지서의 날짜 이후 발생한 임대료와 관련하여, 다른 어떠한 출처에 제출되어 현재 진행 중인 임대료 지원금 또는 기타 재정적 보상 신청이 ☐ 있습니다. ☐ 없습니다.
12. ☐ 원고는 확정기간 임대차계약의 만료를 이유로 각 피고에 대해 점유 반환을 요구합니다.
13. ☐ 3일 내 임대료 지급 또는 퇴거 통지가 송달된 시점에 연체된 임대료는 다음과 같습니다. (금액 기재): \$
14. ☐ 해당 부동산의 합리적인 임대료는 다음과 같습니다. (금액 기재): \$ (하루 기준)
15. ☐ 피고의 계속적인 점유는 약의에 의한 것이며, 원고는 민사소송법 § 1174(b)에 따른 법정손해배상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. (최대 600달러까지의 청구를 뒷받침하는 구체적인 사실을 첨부서류 15에 기재하십시오.)



원고:

피고:

사건 번호:

법원에 제출하지 마십시오

16. ☐ 당사자 간 서면 계약에는 변호사 비용에 관한 조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.17. ☐ 피고의 임대차는 다음의 지역 임대료 규제 또는 퇴거 규제 조례의 적용을 받습니다. (시 또는 카운티 이름, 조례명, 제정일 기재):

원고는 해당 조례에서 적용되는 모든 요건을 충족했습니다.

18. ☐ 그 밖의 주장 내용은 첨부서류 18에 기재되어 있습니다.

19. 원고는 법원이 정한 관할상 금액 제한(있는 경우)을 수용합니다.

20. 원고의 요청 사항

a. 부동산 점유.

b. 본 법적 절차에서 발생한 비용:

c. ☐ 체납 임대료: \$d. ☐ 합리적인 변호사 비용.e. ☐ 계약의 실효.f. ☐ 항목 8에 기재된 면제된 임대료 또는 이주 지원금 상당의 손해배상금: \$g. ☐ 피고들이 판결 선고 시까지 계속 점유하는 각 날짜에 대해, 날짜:

항목 14에 기재된 비율에 따른 손해배상금(시작일:)

h. ☐ 항목 15에서 주장된 행위에 대하여 최대 \$600의 법정손해배상금i. ☐ 기타(자세히 기재):21. ☐ 첨부서류 페이지 수(장수 기재):

불법점유 지원 서비스 제공자(사업 및 전문직법전 §§ 6400-6415)

22. (모든 사건에서 작성해야 함.) 불법점유 지원 서비스 제공자는 대가를 받고 본 양식 작성에 관한 조언 또는 지원을 ☐ 제공하지 않았습니 다. ☐ 제공했습니다. (진술인이 불법점유 지원 서비스 제공자로부터 유상으로 도움이나 조언을 받은 경우에는 a-f 항목을 작성하십시오.)

a. 지원 서비스 제공자 이름:

b. 거리 주소, 시 및 우편번호:

c. 전화번호:

d. 등록 카운티:

e. 등록 번호:

f. 이 명령은 이제 다음 날짜에 만료됩니다. (날짜):

날짜:

이름을 타자 또는 정자로 기재

원고 또는 변호사의 서명

확인서

(변호사, 법인 또는 조합(파트너십)이 확인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확인서 양식을 사용하십시오.)

본인은 이 사건의 원고이며, 본 소장의 내용을 확인하였습니다. 본인은 위에 기술된 정보가 사실이고 정확하다는 것을 진술하며, 이와 상위할 경우 캘리포니아주 법에 따라 위증죄로 처벌받을 것을 감수합니다.

날짜:

이름을 타자 또는 정자로 기재

원고의 서명